

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전봉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19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2. 30.
발의자 : 전봉민 · 주호영 · 안병길
이주환 · 김도읍 · 한무경
조경태 · 이종성 · 황보승희
정동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암예방사업을,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암검진사업을 각각 시행하고 있음.

현재 국내 사망 원인질환으로 1위인 암은 산업화와 인구고령화 등 의 원인으로 암환자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, 그로 인한 암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한 고통을 경감하려면 조기에 암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 아울러, 세계보건기구가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을 위해 C형간염의 퇴치운동을 전세계에 권고하는 등 암과 관련한 사전예방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.

이에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의 내용에 암 예방과 검진 내용을 각각 포함하여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을 연계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).

암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

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5.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

제11조제1항 중 “암을 조기에 발견하는”을 “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암예방사업)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(이하 “암예방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	제10조의2(암예방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5.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</u>
<u>5. (생 략)</u> 제11조(암검진사업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<u>암을 조기에 발견하는</u> 검진사업(이하 “암검진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	<u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u> 제11조(암검진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</u> ----- -----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